

학칙 제·개정 신규대조표

현행	제 · 개정(안)	비고
<p>제21조(전부.전과) ①전부.전과는 1회에 한하며, 학부(과)별 및 계열별로 입학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에 한하여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전부.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부.전과한 자의 재학년한은 종전의 재학년한을 통산한다.</p> <p>④ 전부.전과한 자는 기득학점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학부(과)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기득학점 중 해당학부(과) 과목과 유사.공통되는 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⑥ 전부.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21조(전부.전과) ①전부.전과는 2회에 한하며, 학부(과)별 및 계열별로 입학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<u>1학년 1학기 이상 3학년 2학기 이하 이수한 경우에(자유전공 입학생은 2학년 1학기 이상 3학년 2학기 이하)</u> 한하여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.[개정 2024. .]</p> <p>② ~ ⑥ <변동없음></p>	<p>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과 확대</p>
<p>제22조(전공배정) ① 학부에 입학하여 제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는 반드시 소속학부 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 1전공을 배정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22조(전공배정) <변동없음></p> <p>제22조2(학과배정) ① <u>자유전공 및 계열별 자유전공에 입학하여 제 1학년 과정을 이수한 자는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과를 배정받아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학과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신설(자유전공 입학생에 대한 학과 배정)</p>
<p>부 칙</p> <p>5.(자유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)</p> <p>②자유전공은 신학과, 기독교교육과, 유아교육과, 공연예술학과, 음악학과,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, 게임콘텐츠학과, 스포츠과학과, 스포츠산업체육학과, 스마트시티공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중 한 개 학과를 신청할 수 있다.</p>	<p>부 칙</p> <p>5.(자유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)</p> <p>②자유전공은 신학과, 기독교교육과, 유아교육과, 공연예술학과, 음악학과, 뷰티메디컬디자인학과, 게임콘텐츠학과, 스마트시티공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중 한 개 학과를 신청할 수 있다.</p>	<p>자유전공 선택학과 스포츠 대학 포함</p>